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위반영업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규정하여 옥외영업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조례 목적 변경(안 제1조)
- 나. 옥외영업 제한 지역 수정(안 제6조)
- 다. 규정위반 옥외영업장 행정조치 명시(안 제8조)
- 라.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보완 및 안전관리 규정 추가(안 별표1)
- 마.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행위(단순가열) 허용(안 별표2)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영업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설기준”을 “옥외영업장 시설기준”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준수사항”을 “옥외영업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은 옥외영업장에 대하여”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로, “영업을”을 “옥외영업장 운영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일반주거지역”을 “그 외 지역”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행정조치)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별표 1]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4조 관련)

1. 2층 이상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테이블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
5. 어닝은 접이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 지점은 한 건물 내 여러 점포가 있을 경우 다른 점포와 협의하여 동일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화목, 유류, 가스, 기타 화석원료 등)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8.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9.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10.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돌의자·방지턱·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 대지 안의 외부공간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통로나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통로를 이용한 영업은 불가하다.
12.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接客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 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통로에 선·줄 등을 표시하여 불법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13. 화재가 옥외영업장으로 확산되거나 옥외 조리 시 화재를 대비하여, 옥외영업장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4.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화기 범위는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숯불, 인덕션 등 고정되지 않은 이동식 소형 화기만 허용하며, 사용되는 가스 등은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별표 2]

옥외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제5조 관련)

1.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동 가능한 휴대용 조리기구를 이용한 단순가열만 가능하며, 주방시설(조리·세척 등)을 옥외영업장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업장에서 음주소란 또는 소란 등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기타 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4.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 공간(옥외영업장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옥외에 설치된接客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6.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 영업장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서는 안 된다.
7.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8.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판 부착을 권장하며, 옥외영업장에 출·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한다.
9. 신고된 옥외영업장 면적을 초과하여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를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음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u>영업에</u>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2. (생략)</p> <p>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u>시설기준</u>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u>준수</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음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 ----- <u>영업을</u>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 ----- <u>음외영업장</u> 시설기준 ----- -----.</p> <p>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 ----- <u>음외</u></p>

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제한) ① 시장은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역 및 시간에는 영업을 금지한다. 다만, 진평 음식문화 특화거리(더존마트~롯데마트, 520m)는 예외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2. 전용주거지역: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② (생략)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
-----.

제6조(영업제한)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 옥외 영업장 운영을 ----. <단서 삭제>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그 외 지역 :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행정조치)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3조(영업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17. 12. 19., 2018. 12. 11., 2021. 8. 17.>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5.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수입·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피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2015. 2. 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소 관 부 서		위 생 과
입 안 자	과 장	민 명 숙
	팀 장	전 영 아
	담 당 자	박 은 지 (480-5547)